메가랜드 /// 종로캠퍼스 (2021년)

기본과정 (6주차)

상담 🏗 02) 2135-1806

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



- 01.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·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.(제30회) (0. X)
- 02.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'3개월'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. (제24회 변형) (0, X)
- 03.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·이용 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가 전국 "500명" 이상이고 "2개" 이상의 시·도에서 각각 "30인"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·이 용신청을 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(제21회)(제31회) (0, X)
- 04.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'3월'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 한 '운영규정'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(제30회) (0, X)
- 05.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'6개월'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정 보사업자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. (제31회) (0, X)
- 06.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. (제23회) (0, X)
- 07.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,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성립한다. (제19회)(제22회)(제30회 변형) (0, X)
- 08. 협회 설립과 관련하여,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, 광역시·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는 각각 3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한다. (제22회 변형) (0, X)
- 09.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`도지사에게, 지회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. (제19회)(제30회 변형) (0, X)
- 10.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 (제20회)(제22회)(제25 회)(제27회) (0, X)
- 11. 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. (제20회) (제30회) (0, X)
- 12. 협회의 공제와 관련하여, "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"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정하되,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. (제19회)(제21회) (0, X)

- 13. 협회는 재무건전성 기준이 되는 "지급여력비율"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. (제25회) (0, X)
- 14.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폐업신고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조례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(제25회) (0, X)
- 15. 등록관청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(제21회)(제19회)(제26회) (0, X)
- 16. 검사가 신고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. (제30회) (0, X)
- 17. 포상금은 1건당 150만 원으로 한다. (제30회) (0, X)
- 18.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포상금은 모두에게 균분하여 지급한다. (제 21회)(제22회)(제26회) (0, X)
- 19.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의 지급을 결정하고,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(제30회) (0, X)
- 20. 공인중개사가 '폭행죄'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. (제24회) (0, X)
- 21.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한 시·도지사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·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, 자격증반납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·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. (제26회)(제27회)(0, X)
- 22.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. (제 21회)(제26회) (0, X)
- 23.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등록관청은 6월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. (제20회) (0, X)
- 24.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반드시 등록이 취소된다. (제21회) (0, X)
- 25.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반드시 등록이 취소된다. (제22회)(제26회) (0, X)
- 26.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. (제24회)(제28회) (0, X)

- 27.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'있다'. (제23회)(제31회 변형) (0, X)
- 28.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'등록관 청'이 '100만 원'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 (제23회) (0, X)
- 29.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'3년' 이하의 징역 또는 '3천만'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. (제19회)(제24회) (0, X)
- 30. 거래당사자가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'3년' 이하의 징역 또는 '3천만'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(제21회) (0, X)
- 31.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과태료가 아니라, '벌금형'의 대상이 된다. (제31회) (0, X)
- 32.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두 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'벌금형'의 대상이 될수 있다. (제31회) (0, X)
- 33.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'등록관 청'이 부과한다. (제31회) (0, X)
- 34.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'등록관청'이 부과한다. (제29회) (0, X)

♥수고하셨습니다^^

```
♥ 2021년 필승합격입니다!!!~~~^^*♥
01-0 //
02-X ("30일"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) //
03-0 //
04-0 //
05-X ("1년"이내) //
06-X (재단법인이 아니라, "사단법인"의 규정이 적용된다) //
07-X ("설립등기"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 협회의 성립요건은 등기이다) //
08-X (각각 20명이상) //
09-X (지회는 "등록관청"에 신고하여야 한다) //
10-X ("지체없이"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) //
11-X (부동산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는 협회의 고유업무에 해당되므로 수행할 수 "있다") //
12-0 //
13-0 //
14-X (휴업신고나 폐업신고는 수수료납부의무가 없다) //
15-0 (지급대상이다) //
16-X (검사가 "공소제기" 또는 '기소유예" 한 경우에 포상금이 지급된다) //
17-X ("1건당" 50만원이다) //
18-X ("최초"로 신고`고발한 자에게만 지급한다) //
19-0 //
20-X ("중개사법" 위반으로 "징역"형의 선고를 받아야 "자격취소"사유가 된다) //
21-X (자격증을 "교부한" 시`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) //
22-X (7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) //
23-X (부정등록은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이므로,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(3-3)) //
24-0 (절대적 등록취소사유) //
25-X (업무보증 없이 업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 "될 수" 있다(상대적 등록취소사유), //
26-X (3년) //
27-X (할 수 없다) //
28-0 //
29-0 //
30-0 //
31-X (벌금형이 아니라, 500만원이하의 "과태료"처분의 대상이 된다) //
32-0 (이중사무소는 상대적 등록취소사유이면서,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
   된다. 그러므로 벌금형의 부과가 가능하다) //
33-X (자격증 관리는 자격증을 교부한 "시`도지사"가 한다. 그러므로 시`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
   다) //
34-X (시'도지사가 부과한다) //
```

♥ 각종 자료: (다음카페) 김상진의 공인중개사법♥

♥ 기본서 핵심내용과 핵심지문(메타인지확인지문)해설: (유투브) 김상진의 공인티비♥